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7. 1.(목) / 총 3매(본문2, 참고1)	
담당 부서 도시경제과	담당 자	• 과장 윤의식, 사무관 양운정, 주무관 김재준 • ☎ (044) 201-4842	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1일부터 스마트 챌린지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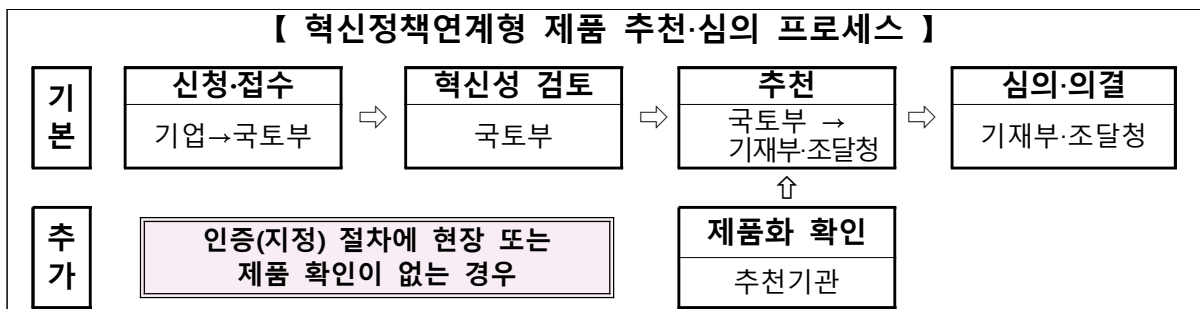
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, 혁신조달로 연계한다

-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·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혜택 -
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 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 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.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‘혁신제품 지정제도’는 혁신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, 패스트트랙 I·II·III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.

구 분	내 용	확정
① 패스트트랙 I	R&D결과물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(각 부처)	조달 정책 심의위 의결
② 패스트트랙 II	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(조달청)	
③ 패스트트랙 III	그밖에 혁신성·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(부처 추천→기재부 선정·위원회 상정)	

-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이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,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.
-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% 감소시킨 ‘스마트 횡단보도’,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‘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’ 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. 이를 감안하여 올해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.
- 스마트챌린지(시티, 타운, 솔루션, 캠퍼스)에서 지자체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(별첨)의 서류를 갖춰 7월 한달(7.1~7.30)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(kimjunghoon@kict.re.kr)로 접수하면 된다.
-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, 기재부·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.


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고, 해당 기업들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양윤정 사무관(044-201-48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

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(패스트트랙3) 모집 공고

공공이 혁신제품의 구매자로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여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조달 제도 중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“2021년도 스마트챌린지 사업 혁신제품(패스트트랙3)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
혁신제품(패스트트랙 III)이란?

- ◆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·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
- ◆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,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·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

□ 목 적

- 정부 혁신성장정책 연계 사업(스마트챌린지 포함)에서 혁신적 제품을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아 조달적합 검토·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
- 지정제품은 수의계약 허용, 구매면책 적용 등 타 혁신제품과 동일 혜택을 부여, 혁신장터(<http://ppi.g2b.go.kr>) 전용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구매를 지원

□ 관련규정
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
-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 1항 3호(기재부 훈령 제543호)